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77호 2022. 12. 9(금)

선 람	기관의 장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22-168호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2-2294호 공시송달공고----- 2
- 남원시 공고 제2022-2380호 도로 지정 변경 공고-----4
- 남원시 공고 제2022-2384호 도로 지정 변경 공고-----5
- 남원시 공고 제2022-2385호 공시송달공고----- 6
- 남원시 공고 제2022-2408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9
- 남원시 공고 제2022-2409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9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22-168호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5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2년 12월 9일

1. 남원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8	문화 시설	남원 다움관	금동 151 일원	5,506	(증)332	5,838	22.06.17.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8	문화시설 (남원다움관)	◦ 문화시설 신설 -면적 : 332㎡	◦ 남원다움관 확장조성사업(남원레코드테크 조성사업)을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특화공간 개발 및 전통과 문화를 담은 구역으로 확대 조성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함

2. 남원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 : “실음생략”

남원시 공고 제2022 - 22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1. 25. ~ 2022. 12. 12. (15일간)
2. 공고장소 :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소유자 현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 : 2022.11.24.)	김○호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781	건축물 부존재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871	주1 목조 주택 39.37㎡ 부1 목조 주택 17.66㎡

4.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24.

남 원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공고 제 2022 - 2380호

도로 지정 변경 공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변경) 공고내역

	지정번호	대지위치	건축주성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위치	도로길이(m)	도로너비(m)	도로면적(m ²)	비고
변경전	202-3-4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166-9(답)	장*원	2022-건축과-신축신고-222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1225-2(답)	55	6.4	350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변경
변경후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166-26(답)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1225-6(답)				

◎ 남원시 공고 제 2022 - 2384 호

도로 지정 변경 공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변경)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 로 위 치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m ²)	비고
변경전	2016 -25	남원시 식정동 56-7(임)	서*상	2016-건축과- 신축신고-412	남원시 식정동 56-7(임)	105	6	633	도로지정 소유자, 길이, 너비,
변경후	2022 -46	남원시 식정동 56-7(임야)	쓰임 사회적 협동조합	2016-건축과- 신축신고-415	남원시 식정동 56-7(임)	93.1	6	584	면적 변경에 따른 도로지정 변경

남원시 공고 제2022 - 23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명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2. 5. ~ 2022. 12. 20. (15일간)
2. 공고장소 :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소유자 현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 : 2022.12.5.)	권○중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462	건축물 부존재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462	주1 목조 주택 44㎡ 주1 목조 주택 36㎡ 부1 목조 창고 19.47㎡

4.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5.

남 원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전라북도 남원시 건축과 건축지원담당
 - 연 락 처 : 063) 620-6597

남원시 공고 제2022 - 2408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기준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항공·지역특화산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시 기업 유치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기준 강화 및 인센티브 조항 신설(안 제13조)

- 국내기업 보조금 지원 시 상시고용인원 기준 신설: 10명 이상
- 보조금 지원 한도액 조정: 60억→50억
- 고용인원에 따른 지원 비율 가산 규정 신설

나. 투자 인센티브 강화 (안 제14조의 2, 안 제18조의2)

- 관외기업 관내 이전 또는 신설 시 건물 취득가액의 10퍼센트, 최고 5억원 지원
- 관외기업 소속 근로자 남원시 이주 시 1인당 200만원최대 1,000만원 지원

다. 항공·지역특화산업 지원 조항 신설 (안 제15조의 2)

- 20억 이상 투자 및 10명 이상 고용 시 투자금액의 20퍼센트, 최대 80억 지원

3. 입법예고기간 : 2022. 12. 09. ~ 2022. 12. 28.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업지원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azurelim@korea.kr), 직접방문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업지원과(☎063-620-66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 . . .
 제출자: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기업지원과장

1. 개정이유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기준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항공·지역특화산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시 기업 유치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기준 강화 및 인센티브 조항 신설 (안 제13조)

- 국내기업 보조금 지원 시 상시고용인원 기준 신설: 10명 이상
- 보조금 지원 한도액 조정: 60억→50억
- 고용인원에 따른 지원 비율 가산 규정 신설

나. 투자 인센티브 강화 (안 제14조의 2, 안 제18조의2)

- 관외기업 관내 이전 또는 신설 시 건물 취득가액의 10퍼센트, 최고 5억원 지원
- 관외기업 소속 근로자 남원시 이주 시 1인당 200만원최대 1,000만원 지원

다. 항공·지역특화산업 지원 조항 신설 (안 제15조의 2)

- 20억 이상 투자 및 10명 이상 고용 시 투자금액의 20퍼센트, 최대 80억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2. 9. ~ 2022. 12. 28.(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이전하는”을 “이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로, “60억원”을 “5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2항”으로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시 고용인원 지원 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 제15조의2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관외기업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를 시에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② 본사이전 및 신설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건물의 취득가액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항공·지역특화산업 지원) 시장은 항공·지역특화산업 관련기업이 본사·연구소·공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하고 투자금액 20억 이상,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8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2(관외기업 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시로 이전하는 상시고용인

원 10명 이상인 관외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시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 1. 관외기업이 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경우
- 2.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3. 시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 등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지 않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국내기업의 보조금 지원)</p> <p>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국고 지원이 수반되는 기업을 제외한 국내기업이 본사·연구소·공장을 설립하거나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6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의 3에 따라 산업단지 분양가를 지원 받은 기업은 투자금액 산정 시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p> <p><신 설></p> <p>② 시장은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공장 신설·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제1항의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13조(국내기업의 보조금 지원)</p> <p>① ----- ----- ----- 이 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 ----- 50억 원 ----- ----- ----- ----- -----.</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시 고용인원 지원 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③ ----- ----- 제1항· 제2항----- -----.</p> <p>제14조의2(관외기업이전비 지원)</p> <p>① 시장은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를 시에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에서 <u>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u></p> <p>② <u>본사이전 및 신설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건물의 취득가액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u></p> <p>제15조의2(항공·지역특화산업 지원) 시장은 <u>항공·지역특화산업 관련기업이 본사·연구소·공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하고 투자금액 20억 이상,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8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p>
<p><신 설></p>	<p>제18조의2(관외기업 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u>시장은 시로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관외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시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u></p>

현 행	개 정 안
	<p><u>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관외기업이 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경우</u> 2. <u>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u> 3. <u>시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 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 등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 받지 않는 경우</u>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자치법규 명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2 - 2409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기준 및 투자 인센티브 강화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기업 유치 및 투자 효과 극대화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 인센티브 강화 세부 지원기준 신설 (안 제5조의 2, 안 제17조의2)

- 관외기업이전비 산정 시 유의사항 및 신청방법
- 관외기업 소속 근로자 남원시 이주 시 1인당 200만원 최대 1,000만원 지원

나. 항공·지역특화산업 지원사항 신설 (안 제12조의 2)

다.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기준 강화(안 별표 2)

- 보조금 산정 비율 변경(투자액:고용규모 = 80:20퍼센트 → 50:50 퍼센트)
- 고용에 따른 보조금 가산기준 신설(3퍼센트 ~ 10퍼센트)

라. 별표 서식 정비 사항 반영 (안 제4조, 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 안 제11조 ~ 안 제14조, 안 제18조, 안 제20조)

3. 입법예고기간 : 2022. 12. 09. ~ 2022. 12. 28.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업지원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azurelim@korea.kr), 직접방문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업지원과(☎063-620-66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 . .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기업지원과장

1. 개정이유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기준 및 투자 인센티브 강화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기업 유치 및 투자 효과 극대화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투자 인센티브 강화 세부 지원기준 신설 (안 제5조의 2, 안 제17조의2)
 - 관외기업이전비 산정 시 유의사항 및 신청방법
 - 관외기업 소속 근로자 남원시 이주 시 1인당 200만원 최대 1,000만원 지원
- 나. 항공·지역특화산업 지원사항 신설 (안 제12조의 2)
- 다.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기준 강화 (안 별표 2)
 - 보조금 산정 비율 변경(투자액:고용규모 = 80:20퍼센트 → 50:50 퍼센트)
 - 고용에 따른 보조금 가산기준 신설(3퍼센트 ~ 10퍼센트)
- 라. 별표 서식 정비 사항 반영 (안 제4조, 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 안 제11조~안 제14조, 안 제18조, 안 제2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2. 9. ~ 2022. 12. 28.(20일간)
 - 결 과:
 - 2) 규제예비심사: 완료(반영)
 - 3)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 4)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조제4항 전단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관외기업이전비 지원) ①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본사이전 및 신설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외기업이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에 본사를 이전 또는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 중에서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②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본사 이전 또는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본사이전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별지 제6-1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별지 제6-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조제2항”을 “제30조제3항”으로,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항공·지역특화산업 지원) ① 조례 제15조의2에서 항공·지역특화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 제3호, 제6호에 따른 경량항공기,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UAM(Urban Air Mobility) 관련 산업 등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시장이 인정하는 산업 또는 업종

2. 바이오 관련 특화산업 또는 업종

3.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련 산업 또는 업종

② 시장은 조례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항공·지역특화산업 해당여부를 전문가 단체·연구소 등 관계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관외기업 이주직원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이주직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1회만 지급한다.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200만원

2. 근로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가 이주한 경우: 1인당 200만원, 최대 1,000만원

② 이주직원 보조금은 근로자 및 가족이 2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급한다.

③ 기업이 이주직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에 따른 투자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인정하는 투자금액은 공장등록일 또는 공장변경등록일까지의 투자에 한정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별제 제18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등) ①·② (생략)</p> <p>③ 삭제</p> <p>④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또는 투주협약체결일부터 3년 내 <u>별지 제2호서식</u>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20.3.13.></p> <p><u><신 설></u></p>	<p>제4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p> <p>-----</p> <p>--- <u>별지 제1호서식</u>-----</p> <p>-----</p> <p>-----</p> <p>-----</p> <p><u>제5조의2(관외기업이전비 지원)</u></p> <p>① <u>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본사이전 및 신설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외기업이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를 이전 또는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 중에서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에 대해서만 지급한다.</u></p> <p>② <u>이전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본사 이전 또는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본사이전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의2(물류비 지원) ① 조례 제19조의2에 따라 물류비를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u>별지 제6-1호서식</u>에 따라 해당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0조의2(물류비 지원) ① ----- ----- ----- <u>별지 제7호서식</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3(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① 조례 제19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분양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일 또는 건축 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u>별지 제6-2호서식</u>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0조의3(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① ----- ----- ----- <u>별지 제1호서식</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u>별지 제7호서식</u>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의 보</p>	<p>제11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① ----- ----- ----- <u>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u>----- ----- -----.</p>

현 행	개 정 안
<p>완 및 취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완 및 취하할 수 있다.</p>	<p>----- ----- ----- -----.</p>
<p>② ~ ④ (생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생략) ②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u>별지 제8호서식</u>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30조제3항</u>----- ----- ----- ----- <u>별지 제10호서식</u>----- ----- -----.</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 ⑤ (생략)</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12조의2(항공·지역특화산업 지원) ① 조례 제15조의2에서 <u>항공·지역특화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u> 1. 「<u>항공안전법</u>」 제2조제2호, 제3호, 제6호에 따른 <u>경량항공기,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UAM(Urban Air Mobility) 관련 산업 등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u></p>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외국인투자기업 산업입지 보조금) ①·② (생략)</p> <p>③ 조례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u>별지 제9호서식</u>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4조(외국인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지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u>별지 제9호서식</u>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련된 시장이 인정하는 산업 또는 업종</u></p> <p>2. <u>바이오 관련 특화산업 또는 업종</u></p> <p>3. <u>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련 산업 또는 업종</u></p> <p>② <u>시장은 조례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항공·지역특화산업 해당 여부를 전문가 단체·연구소 등 관계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u></p> <p>제13조(외국인투자기업 산업입지 보조금)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별지 제11호서식</u> ---- ----- ----- -----</p> <p>제14조(외국인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 ----- ----- <u>별지 제11호서식</u>----- -----</p>

현행	개정안
<p>하고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③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원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u>별지 제11호서식</u>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의 보완 및 취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완 및 취하할 수 있다.</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p> <p>----- <u>별지 제14호서식</u> -----</p> <p>-----.</p>
<p>제20조(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36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사전에 <u>별지 제12호서식</u>의 투자유치 참여 신청서 및 투자유치계획서를 통보한 개인 또는 기업·법인·단체·분양전문 대행사로서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유치대상 기업의 임직원인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②·③ (생략)</p> <p>④ 제1항에 따라 유치실적이 있</p>	<p>제20조(포상금 지급 등) ① -----</p> <p>-----</p> <p>---- <u>별지 제15호서식</u> -----</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p>

현 행	개 정 안
<p>는 사람이 포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치기업의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공장설립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u>별지 제13호서식</u>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기업 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기업 유치에 가장 주도적·결정적 역할을 한 1명만 포상금을 지급한다.</p> <p>⑤ ~ ⑦ (생략)</p>	<p>----- ----- ----- ----- <u>별지 제16호서식</u> ~ <u>별지 제18호서식</u> ----- ----- ----- ----- ----- ----- ----- -----</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별표 2]<개정 2016. 2.12., 2020. 3. 13.>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 (제16조 관련)

$$\text{보조금 지원액} = \text{투자액 적용 보조금} + \text{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text{○ 투자액 적용 보조금} = [\{ \text{투자액} - 10\text{억원(공제액)} \} \times \text{지원비율}] \times \frac{50}{100}$$

$$\text{○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 [[\{ \text{투자액} - \text{투자액}(1 - \text{투자고용계수}) \} - 10\text{억(공제액)}] \times \text{지원비율}] \times \frac{50}{100}$$

$$\text{○ 투자고용계수} = \frac{\text{종업원수(명)}}{\text{투자액(억원)}}$$

* 종업원 수 : 투자보조금 정산시의 상시고용인원

단, 투자고용계수 값이 최고 1을 넘을 경우에는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가산기준

- 고용규모 가산 보조금 = [{ 투자액 - 10억원(공제액) } × 지원비율]

고용 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비고
15명 이상 20명 미만	3%p	
20명 이상 30명 미만	4%p	
30명 이상 40명 미만	5%p	
40명 이상 50명 미만	6%p	
50명 이상 60명 미만	7%p	
60명 이상 70명 미만	8%p	
70명 이상 80명 미만	9%p	
80명 이상	10%p	

*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 및 가산기준은 별도 산정한다

(뒤쪽)

구 분	붙 임 서 류
제 출 자 료	1. 신청일 직전 3개년 재무제표 1부 2. 사업계획 승인일이 기재된 공문서 사본 1부 3.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설치 및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입금표), 대금지급 전산 이체내역서 각 1부 5. 건축 배치도 및 층별 상세도 1부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7. 준공 건축물 및 기계장비 등 투자확인 사진 2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 에 해당 동의서류에 √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대장		국세 납세사실증명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국세 납세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관광사업투자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청한 관광사업투자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8.4.6.>

자동차대여사업 보조금 신청서(제8조 관련)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업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사무소	전화					팩스					
	영업소	E-mail.										
차고지 유형	<input type="checkbox"/> 분양 <input type="checkbox"/> 임대											
차고지 주소												
자동차 등록구분	합계(A=B+C-D)			신규(B)			이전(C)			말소(D)		
	계	승용	승합	계	승용	승합	계	승용	승합	계	승용	승합
취득세 납부액	원											
	* 2011.1. 1 이전 등록분은 등록세, 취득세를 합산하여 기재											
지역개발채권 매입·매도 내역												
매입(A)				매도(B)				차액(A-B)				
대수	매입액			대수	매도액			대수	매도차액			
대	원			대	원			대	원			
보조금 신청액	금 원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붙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사본 1부 3. 지역개발채권 매도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1부 4. 차량별 매입·매도내역 1부(뒷면 별지 서식 작성)
------	--

단, 붙임서류 제출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서류는 뒷면을 참조하여 동의인 날인으로 해당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8.4.6.>

고용보조금 신청서(제9조 관련)

※ [] 및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뒤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국내기업 <input type="checkbox"/> 국내복귀기업	신청기준일	<input type="checkbox"/> 사업개시일 이후		
	<input type="checkbox"/> 외국인투자기업 <input type="checkbox"/> 관광사업투자기업		<input type="checkbox"/> 건축허가일 이후 <input type="checkbox"/> 관광진흥법에 의한 착수일로부터		
지원 대상 (신청인)	외국투자자 <small>*국내기업은 기재하지 않음</small>	상호 또는 명칭	국 적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대	입지유형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관광사업투자는 개별입지 선택)		
투자유형	<input type="checkbox"/>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	<input type="checkbox"/> 국내복귀기업의 신·증설			
	<input type="checkbox"/> 수도권이전 <input type="checkbox"/> 관내기업의 신·증설 <input type="checkbox"/> 창업기업	<input type="checkbox"/> 수도권 이전외 국내기업의 신·증설 <input type="checkbox"/> 관광투자기업			
<input type="checkbox"/> 공장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시설			
투자협약 또는 유치일		외국인 투자신고일	업 종 (KSIC코드) ()		
		<small>*외국인투자만 기재</small>			
투자내용	소 재 지				
	투자금액				
	투자기간				
	고용계획 ①기존 명 ② 신규고용 명(남원시 관내 명)				
	투자내용				
사업개시일 (공장설립승인일)	건축허가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착수일			
상시고용인원 (명)	총인원	이전 고용인원	신규 채용 인원		
			계	도 내	관 외
				관외	관내
보조금 신청액	금		원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붙임서류 뒷면 참조. 단, 붙임서류 제출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서류에 대해서는 뒷면 동의인 날인으로 해당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뒤쪽)

신 청 인 제 출 서 류

- 1. 신청기준일 증명 서류 사본 1부(아래에 해당되는 서류 제출)
 - 가. 제조업 : 공장설립승인일이 기재된 공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 나. 관광투자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착수보고서 제출 공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서 사본
- 2. 고용보조금 신청 대상자 명단 1부(별지 제4-1호 서식)
-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4.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6. 고용보조금 신청인(고용자)의 개인별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1부 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택 1종의 서류만 제출.
- 7. 월별 임금지급내역서 및 급여이체내역 사본 1부

담 당 자 확 인 사 항

- 1. 근로자 개인별 주민등록초본 1부(근로계약 체결일 이전에 남원시 거주자 조사 자료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 에 해당 동의서류에 √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한 고용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같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뒤쪽)

신 청 인 제 출 서 류

- 1. 신청기준일 증명 서류 사본 1부(아래에 해당되는 서류 제출)
 - 가. 제조업 : 공장설립승인일이 기재된 공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 나. 관광투자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착수보고서 제출 공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서 사본
-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3. 근로계약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5.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의 개인별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1부
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택 1종의 서류만 제출.
- 6. 교육훈련자 명단 1부(별지 제5-1호 서식)
- 7. 교육훈련수료증(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1부
- 8. 교육훈련비 납부영수증 사본 또는 교육비 이체내역서 사본 1부

담 당 자 확 인 사 항

- 1.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의 개인별 주민등록초본 1부(근로계약 체결일 이전에 남원시 거주자 조사 자료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 에 해당 동의서류에 √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교육훈련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교육훈련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같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물류비 지원금 신청서(제10조의2 관련)

※ [] 및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뒤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지원 대상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투자유형	<input type="checkbox"/> 이전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사업장소재지		업 종 (KSIC코드)	()
사업장규모	부지면적	건축규모(연면적)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물류운송비용	합 계	육상운송비	해상운송비
보조금신청액	천원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9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붙임서류

1.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 1부.
2. 운송약관 또는 영업약관 계약서 1부
3. 차량등록증 1부.

210mm×297mm[백상지 80g/m²]

물류비 지원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9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신청한 국내 기업투자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사업계획서 (제11조 관련)

1. 기업개요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업종(KSIC코드)	주요생산품			
설립일	종업원수	명		
기업구분	자본금(억원)	자산규모(억원)		
		동산	부동산	부채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2. 투자계획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입지유형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사업기간	~	업종(KSIC코드)								
투자완료 후 상시고용예정인원	명	주요 생산품								
공장 소재지										
부지소요면적 (㎡)	건축계획면적 (㎡)									
	계		공장		연구소		근로환경개선시설		기타부대시설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총투자금액 합계 (A=B+C+D+E)	토지구입비 (B)		건축·근로환경개선시설 (C)		시설장비 구입비 (D)		기반시설 설치비 (E)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 연도별 건설계획

구분/년도	년도				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부지매입								
인허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4.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년도	총 투자금액	년도	년도	년도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기 타				

5. 투자동기

6. 기업체 연혁

년 월 일	주 요 내 용

* 기업체의 설립, 주요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 기입

7. 기대효과

* 투자 완료 후 고용효과, 지방세 납부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연도별로 기재

8.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희망 부지 위치도 및 지적도

위 치 도

지 적 도

(뒤쪽)

구 분	붙 임 서 류
공통 제출자료	1.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 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의 구체적 설치 및 사용계획 내역 포함)
입지보조금 신청시	1. 입지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매매·임대 계약서 사본, 입금확인서(입금표)
투자보조금 신청시	1.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입금표), 대금지급 전산이체 내역서 각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건축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2부

* 입지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투자보조금 신청시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 신청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 에 해당 동의서류에 √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사실증명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	<input type="checkbox"/>	지방세 납세증명서	<input type="checkbox"/>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input type="checkbox"/>
토지대장	<input type="checkbox"/>	국세 납세사실증명	<input type="checkbox"/>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input type="checkbox"/>	국세 납세증명서	<input type="checkbox"/>
건축물관리대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2조,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신청한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뒤쪽)

구 분	붙 임 서 류
공통 제출자료	1.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 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의 구체적 설치 및 사용계획 내역 포함)
입지보조금 신청시	1. 입지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매매·임대 계약서 사본, 입금확인서(입금표)
투자보조금 신청시	1.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입금표), 대금지급 전산이체 내역서 각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건축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2부

* 입지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투자보조금 신청시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 신청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 에 해당 동의서류에 √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부분기동 공장등록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대장		국세 납세사실증명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국세 납세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2조,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신청한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에 따라 지원 등의 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신 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이 주 직 원 보 조 금 신 청 서 (제17조의2 관련)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대 성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		전 화
			F A X
남원시 주민등록 이전 내역			
사업장 이전일			
이전근로자 수	명		
근로자 명단	별지 작성 가능		
보조금 신청액	천원		
<p>「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 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법인 (서명 또는 인)</p>			
남원 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수수료 없 음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투자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 (제18조제2항 관련)

※ [] 및 □의 해당빈칸에 √ 하세요.

(앞쪽)

① 기업개요	법인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자 본 금				
	본 점				
기업 현 황	기업명		대표자명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소재지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소재지				
	남원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연락처		대표전화.	팩스.	
	담당자		부서명		성 명
			E-mail.		휴대폰.
	업종(KSIC코드)		생산물		
	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제조시설(m ²)	
		연면적(m ²)		부대시설(m ²)	
보조금 지원 유형		이 전 (□입지 □투자 □교육훈련 □고용), 신증설 (□투자 □교육훈련 □고용)			
투자계획금액(천원)		실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 미달사유					
상시고용 예정인원		명	상시고용인원	명(이전 , 신규)	
신규채용 예정인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착공예정일		착공일			
설립완료 예정일		설립완료일			
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입지계약 후 1년 6개월 이내 착공여부		□ 착공 □ 미착공 [입주계약체결일 :]			
미착공 사유					

(뒤쪽)

② 향후계획					
보 조 금 지 원 액 (천 원)	입지지원 [지원일자]	집행계획(A)	국비 :	도비:	시비:
		실집행액(B)	국비 :	도비:	시비:
		미집행액(A-B)	국비 :	도비:	시비:
		미집행액 조치(계획)			
	투자지원 [지원일자]	집행계획(A)	국비 :	도비:	시비:
		실집행액(B)	국비 :	도비:	시비:
		미집행액(A-B)	국비 :	도비:	시비:
		미집행액 조치(계획)			
	교육 훈련지원 [지원일자]	계획인원:	지급인원 :		
		집행계획(A)	국비 :	도비:	시비:
		실집행액(B)	국비 :	도비:	시비:
		미집행액(A-B)	국비 :	도비:	시비:
		미집행액 조치(계획)			
	고용지원 [지원일자]	계획인원:	지급인원 :		
		집행계획(A)	국비 :	도비:	시비:
		실집행액(B)	국비 :	도비:	시비:
미집행액(A-B)		국비 :	도비:	시비:	
미집행액 조치(계획)					
③ 특이사항					
작성 요령	① 기업의 연혁, 이전 및 산증설 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투자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6. 2. 12> <개정 2018.4.6.>

업종전환 신청서 (제 18조 제 3항 관련)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공장소재지					
공장등록일		보조금 지급일			
지원받은 사항					
변경 전	업 종	공장부지면적(m ²)	제조시설면적(m ²)	부대시설면적(m ²)	기타
변경 후	업 종	공장부지면적(m ²)	제조시설면적(m ²)	부대시설면적(m ²)	기타
변경사유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4.6.>

투자유치 포상금 신청서 (제20조제4항 관련)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업·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법인 등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유치기업 투자내역			
유치기업 현 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법인 등 소재지)	전화	팩스
			E-mail.
투자국		<input type="checkbox"/> 국내 [도시명] <input type="checkbox"/> 국외 [국가명]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대	입지유형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투자협약일	공장착공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			
업 종 (KSIC코드)	투자에정금액	(USD 백만원)	
투자내역	부지면적(m ²)	공장용지면적(m ²)	건축연면적(m ²)
			기준공장면적률(%)
	제조시설면적(m ²)	부대시설면적(m ²)	

고용현황			
구 분	유치 신청서 제출시 기업 고용계획	포상금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투자완료 후 상시고용인원
총인원	명	명	명
기 존	명	명	명
신 규	명	(A+B) 명	(A+B) 명
		A. 전라북도내 거주자 명	A. 전라북도내 거주자 명
		B. 남원시 거주자 명	B. 남원시 거주자 명

투자금액				
합 계 (A=B+C+D+E)	토지구입비 (B)	건축·바르·환경개선시설 (C)	시설장비 구입비 (D)	기반시설 설치비 (E)
원	원	원	원	원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붙임서류 뒷면 참조

(뒤쪽)

구 분	붙 임 서 류
제출자료	<p>1. 투자유치활동내역서 및 증빙서류</p> <p>가. 일자별 투자유치 활동내역 관리대장 및 기여도 1부(별지 제13-1호, 제13-2호 서식)</p> <p>가.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 공문서 사본 1부</p> <p>나. 투자유치 관련 활동 경비 지출내역 사본 1부</p> <p>다. 투자유치 활동사진 1부</p> <p>라. 법인 및 단체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단체등록증명원 사본 1부</p> <p>2. 유치기업 투자내역 증빙서류</p> <p>단, 유치기업의 투자내역 증빙서류는 유치기업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p> <p>가. 유치기업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p> <p>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서</p> <p>다.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p> <p>라.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 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p> <p>마.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의 구체적 설치 및 사용계획 내역 포함)</p> <p>마.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입금표), 대금지급 전산이체 내역서 각 1부</p> <p>사.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p> <p>아. 건축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p> <p>자. 유치기업 임원명단 1부</p> <p>차. 외국인기업 유치시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p>

투자유치 포상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청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7조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같음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자치법규 명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